

환경전공인의 환경

趙舜行 /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教授 · 工博

環境工學이라는 단어는 '70년대 초기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생소한 단어였다는 感이 든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한 경제 규모의 증대 및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오염물질의 성분 또한 십수년전과 비교하여 볼 때 다양화되었고, 이들이 야기시키는 문제들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深刻性도 점차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 높아졌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사업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에 대한 계몽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근본적인 처리 방법의 개발에 대한 연구들도 관련 학계나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짧은 기간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처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건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계몽시키는 과정이 고등학교의 수준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教養課目으로 지정되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책의 관심도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 뿐만 아니라 기타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과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기를 그 시점으로 하여 전국의 대학에 10여개의 환경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환경학과 및 환경보호학과 등 환경보전에 관련된 학과 및 과정도 많은 대학에 설치되어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기술, 처리시설의 계획, 오염물질의 피해, 국민보건에 대한 영향등의 관점에서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과에서 수학중인 학생들은 개개인의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졸업후 환경보전에 관련된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산 경험을 얻고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워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졸업장을 쥐고 학교 문턱을 넘어서기도 전부터 산업체 및 각 기업체로부터 외면당하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그동안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함에 당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대부분의 기업공채 모집요강에서 들 수가 있는데,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오염 및 이에 관련되는 학과의 졸업자는 응시원서 접수의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각 기업체의 성격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거나 처리해야 할 오염물질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들 전공자에 대한 모집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으며 관계법에 준하는 환경담당관리 기사의 정원을 이미 채용하고 있는 경우

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체에서 폐수 및 오염물질의 처리 부서의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부서의 존재는 마치 셋방살이 정도의 취급 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규모의 크기를 들어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열의도를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규모의 大小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효율이 증감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성향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모든 기업의 최대 목표가 이윤추구에 있으므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개념은 모든 기업의 공통된 생각이며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생산비용에 있어 폐수 및 오염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미미한 수치에 지나지 않으며 환경의 보전적인 측면에서 납득될 만한 기준인가는 재고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즉, 폐수 및 오염물질의 처리가 단지 규제치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적인 처리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진정한 환경보전의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처리 방법의 개발 및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여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법규상에는 일정규모의 기업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에 자격증을 소지한 일정한 도의 인원을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각종 오염물을 처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기존 직원을 교육시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기존 부서를 운영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물론 기존 기술자들의 능력이나 경험을切实下시킬 의도나 낮게 평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정책으로 인하여 환경보전에 뜻을 두고 학문에 정진한 졸업생들이 각종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오염물질의 처리시설에 접하여 그동안 익힌 학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발휘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보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떠나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직결된다. 이러한 문제가 전술한 바와 같은 기업의 기업 정신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현재 전국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의 환경공학과 및 그 관련 학과에서 연간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는 어렵잖아 계산하더라도 600명에서 700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기업에서의 공채계획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므로 심각한 供給過剩 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된 계산인지는 모르나 경제기획원에서의 2000년대의 환경분야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需給計劃에 의거하여 1988학년도에는 전국에 환경공학과 및 그 관련 학과가 대학 수준에서만 8개학과가 신설되어 전국에 존재하는 환경공학과 및 그 관련 학과는 20개를 월션 상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계산을 하여 보면 1992학년도에는 환경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 900명에서 1000명이 해마다 배출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현재의 환경관련학과의 졸업자들만으로도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에서 획기적인 환경대책의 변화나 기타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심각한 구직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환경공학 및 이의 관련학과 출신자로 제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학과의 개념이 공급과학이라는 성격에 부합되지 않을 지 모르나 기본적인 전문인을 바탕으로 각분야의 협력을 첨가하여 조화시킨다면 종합적인 기술개발로서 목적한 바를 달성시킬 수가 있을 것이며 현 상태에서 배출되는 환경분야 전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취해져야 할 조치라고 본다.

둘째로, 기업체에서의 환경부서에 대한 확장 및 개편으로 보다 많은 환경 전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업의 환경 전문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담당부서가 장래성도 없으며 심지어는 流配地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정도이므로 환경종사자들은 조직내에서도 경원시되고 상하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등 본의아닌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기업주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방류기준사항을 초과하여 적발되는 경우 오히려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불리한 조건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담당자들에 대한 기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세째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환경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환

경문제는 몇몇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체에서의 부단한 노력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집중적이며 계속적인 투자 및 지원, 국민들의 협조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환경보전의 과업이 국토의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 임무는 국가방위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방위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다. 또한 공무원 공채의 경우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분야의 시험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보다 넓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민신고센타 운영

여러분 주변에서 하천에 오물을 버린다거나, 쓰레기, 기름 등이 흘러가고 있을 때, 기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환경청 : (서울) 422-7623

부산환경지청 : 334-7606, 332-7607~8

대구환경지청 : 93-7652 · 8176

광주환경지청 : 33-6890 · 355-2186 365

대전환경지청 : 524-4711~3

원주환경지청 : 44-3305

서울시청 환경과 : 731-6406~8

※ 기타 전국 각 시·구·군청에 신고 바람.